

울산지방법원 2023. 9. 11 선고 2022가단87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3. 8. 7.

판결 선고2023.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8,526,281분의 14,956,513.4271 중 5,341분의 2,28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0. 11. 16. 접수 제49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에 관하여 2003. 12.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에 관하여 1999. 7. 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12. 31. 접수 제504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 중에서 5,341분의 1,98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12. 31. 접수 제504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 1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 중에서 나머지 5,341분의 306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4. 1. 28. 접수 제34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0.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에 관하여 2010. 11. 5.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0. 11. 16. 접수 제499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3. 12.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1. 15. 피고 C에게 그 지분을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는 위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호 제2항).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0. 11. 15.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며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11. 15.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2. 10.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3. 12.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분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는 E을 원고로 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3959)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2020. 2. 5. E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분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3982 사건에서 원고가 이 부분 지분이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E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0나52891)에서 2021. 8. 12. 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상민

별지